	강사 인사 규정	제정일자	2019. 7. 5
		개정일자	
		페 이 지	1-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56조의2에 의한 "강사"의 임용과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강사"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비전일제로 근무하는 강사를 말한다.

제 2 장 임 용

제3조(자격) 강사의 자격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자격 인정을 받는 자로 한다.

제4조(임용시기) ① 강사의 임용은 2월 1일 및 8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임용절차) ① 강사의 신규임용은 공개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체를 원소속기관으로 3년 이상 근무 중인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 절차는 「강사신규임용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

제6조(임용기간)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잔여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2.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사망

② 임용기간은 통산하여 최대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의거 임용기간 초과자를 해당 학부(과)에서 재임용 추천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1년씩 2회까지 추가로 재임용할 수 있다.

③ 임용할 수 있는 연한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있는 해당 학기말까지로 한다.

제7조(임용제한)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심사과정에서 기밀준수여부 또는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경우
2. 학부(과) 및 본교의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본교 강사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자
4. 재임용탈락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8조(임용취소)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공무원 임용자격의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임용 시 제출서류가 허위사실 또는 허위 증명인 경우
3. 담당하기로 한 과목의 폐강 또는 과목이 속한 학부(과)의 모집중지 등 교육과정 상 불가피하게 강의가 이루어지지 어려운 경우
4. 임용이 확정된 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기 근무에 임하지 않을 경우

제9조(당연퇴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
1. 임용기간 만료 후, 다시 임용되지 않은 자는 임용기간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2. 계약으로 정하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사립학교법 제57조에 해당하는 자
4. 해당학기에 만 65세가 되는 날이 있는 자

제10조(면직사유)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을 할 수 있다.
1. 정관,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학부(과)가 모집중지 되거나 과원이 되었을 경우
5. 담당교과목 모두가 폐강된 경우
6.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7.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8.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교학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가. 제15조제2항에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나. 수업 및 휴·보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 성적평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을 부여한 경우
9.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10.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② 강사가 면직사유로 인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제 3 장 재임용

제11조(재임용심사위원회) ① 강사재임용심사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 및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한다.

② 강사재임용심사위원은 강사임용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제12조(재임용) ① 강사의 임용기간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② 강사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1호 서식 「재임용 신청서」 및 관련한 서류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재임용을 기대 또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재임용 평가 시기는 재계약 예정 직전학기 중에 실시하며, 재임용평가는 별지2호의 '강사 재임용평가 기준' 에 따른다.

④ 강의평가 결과가 평가시행 직전 3개 학기 중 2개 학기이상 전체 교원의 하위 10%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재임용에서 제외한다. 다만, 임용 학기가 3개 학기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별지2호의 '재임용 기준점수' 를 충족한 자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⑥ 재계약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된 강사는 당연 퇴직한다.

⑦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3호의 서식「강사 재임용 거부사유서」를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재임용 탈락 시 소명) ① 재임용 거부를 받은 강사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원인사위원회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이의 신청된 강사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재심의 한다.

제14조(재임용 거부) 강사가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경우 총장은 재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담당교과목 모두가 폐지된 경우
2. 소속 학부(과)가 모집중지로 담당교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
3. 담당 교과목 강의를 위해 신규 전임교원을 임용한 경우
4. 계약으로 정한 면직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5. 기타, 임용계약서의 재임용 불가에 해당하는 경우

제 4 장 직무 및 근로조건

제15조(의무) ① 강사는 사립학교법 및 교육관계법령과 본교에서 정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담당 교과목의 교육과 연계된 교육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수업과 관련된 문서(강의계획서, 평가계획서, 평가 관련 결과보고서 등) 작성 및 준수
2. “1호”에 따른 담당 교과목의 강의 및 성적 처리
3. 담당 교과목에 대한 학습 상담 및 지도
4. 대학 지정 및 법정의무교육 이수 : 대학 학사운영 설명회, 4대 폭력예방 교육, 청탁금지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안전교육 등

제16조(소속) 강사가 본교 내의 여러 학부(과)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경우 최초에 임용이 결정된 소속에 따르며 재임용 시 강사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교수시간) 강사는 주당 6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 주당 9시간까지 할 수 있다.

제18조(처우) ① 임금은 본교 강사료지급기준 및 임금계약에 정한다.

②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③ 강사 본인의 사정으로 의원면직을 원하는 경우 1개월 전까지 소속 학부(과)장에게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휴직) ① 강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은 휴직 신청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20조(휴직기간의 만료 등) ① 휴직기간이 만료되고도 복직하지 아니하는 강사는 자동 면직된다.

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 중에는 재임용을 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정관 제40조 제7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된다.

제21조(휴직강사에 대한 처우) 휴직중인 강사는 본교 강사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 5 장 징 계

제22조(징계) 강사의 징계에 관하여는 본교 교직원에게 적용하는 「교직원징계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장 보 칙

제23조(보칙) ① 강사의 인사기록물 및 문서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 등을 준용하며,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재임용 절차 보장에 관한 예외) 2019학년도 2학기에 신규임용 된 강사의 경우 신규임용 및 재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3. (다른 규정의 폐지) 종전의 시간강사 위촉규정은 2019년 7월 5일자로 폐지한다.

[별지 1]

강사 재임용 신청서

사 번		성 명	
소 속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노력 작성>

0000학년도 0학기 ~ 0000학년도 0학기 강사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재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2]

강사 재임용 평가표

사 번		성 명	
소 속			

구 분	평 가 내 용	배점	배점 한도	평가 점수
강의계획서 입력	· 담당 과목 강의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입력기간 준수 ※ 미준수시 : 과목당(분반별) 2점 감점(1일 경과시)	10	0점~10점	
휴강 및 보강 준수	· 담당과목의 휴강 및 보강 준수 ※ 미준수시 : 과목당(분반별) 2점 감점(건별)	10	0점~10점	
출결관리	· 출결관리 준수 ※ 출결 미처리시 : 과목당(분반별) 2점(건별)	10	0점~10점	
성적입력	· 담당 과목 성적입력 및 성적 공시기간 준수 ※ 미준수시 : 과목당(분반별) 2점 감점(1일 경과시)	10	0점~10점	
CQI작성	· 교과목 CQI작성 기간 준수 ※ 미준수시 : 과목당(분반별) 2점 감점(1일 경과시)	10	0점~10점	
강의평가 평점	· 강의평가 4.5 이상 · 강의평가 4.0 이상 · 강의평가 3.5 이상 · 강의평가 3.0 이상 · 강의평가 2.5 이상 · 강의평가 2.0 이상 · 강의평가 2.0 미만	35 25 20 15 10 5 0	0점~35점	
개선노력	·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해야할 부분을 개선하기위한 노력	10	0점~10점	
의무교육	· 대학지정 및 법정 의무 교육 참여 ※ 미참여시 : 교육당 2점 감점	5	0점~5점	
심사결과	적합(70점 이상) □			
	부적합(70점 미만) □			

1) 합계 70점 이상인 경우 재임용 대상자로 한다

2) 강의평가점수는 직전 3개 학기 평균점수로 한다.(단, 평가기간 중 신규임용 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직전1개학기 점수로 평가)

3) 강사 재임용 평가표는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이 참석하고 탐석교원 과반수 이상의 합의로 위원장이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 년 월 일

위원장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원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원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원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교학처장 귀하

[별지 2-1]

강사 재임용 평가 총괄표

소속 학부(과)	

재임용 평가 기준	· 재임용심사위원회 위원의 재임용 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하인 경우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함

신청자명	심사위원별 총괄 점수					합 계	재임용 여부

상기와 같이 강사 재임용 평가 총괄표를 협의하여 제출합니다.

20 . . .

위원장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원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원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원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교학처장 귀하

[별지 3]

강사 재임용 거부 사유서

사 번		성 명	
소 속			

위와 같은 사유로 강사 재임용을 거부합니다.

20 년 월 일

충청대학교 총장